Fire Sci. Eng., Vol. 29, No. 2, pp. 54-63, 2015 [Research Paper]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우성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A Preliminary Study on Vitalization Measures for Volunteer Fire Department Organizations

Seong-Cheon Woo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rch 2, 2015; Revised March 17, 2015; Accepted April 24, 2015)

요 약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이하 시 · 도) 시 · 읍 · 면에 설치된 민간 소방조직이다. 화재예방 · 진압은 물론 각종 재난의 방지와 그 수습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무보수의 자율적 민간봉사 조직이다. 이러한 숭고하고 참된 의용소방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소방조직 및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시론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신임 의용소방대원 기본 소양교육실시,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의 임면권 일원화,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등을 통한 의용소방대의 현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Volunteer fire department is a private firefighting organization which is set up in Seoul, metropolitan cities, city/eup/myeon to assist firefighting service. It actively participates in prevention and aid of various disasters as well as in fire prevention/extinguishment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In short, it is a non-paid, voluntary, private service organization; it is composed of residents in the area who have spirit of service and sacrifice, wish to join, and work in their own occupation while assisting firefighting work. Yet, voluntary fire department of such nobility and sincerity has not been vitalized, and accordingly, studies regarding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in firefighting organizations and academia. Therefor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1) to analyze issues of current situation through looking at basic training for new volunteer firefighter, unification of power to appoint and dismiss captain and crews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volunteer fire firefighters with a few good people, and vitalization of female volunteer firefighters; and 2) to propose vitalization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Keywords : Volunteer fire department, Private firefighting organization, Vitalization measure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설치 · 운영되고 있다. 대장 및 대원들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화재 · 구조 · 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무보수와 비상근으로 봉사하는 조직이다. 화재의 예방 · 경계와 진압, 구조 · 구급, 등 재난발생시 각종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조직이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최근에 들어서는 소방서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특성과 관할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화재

E-Mail: scwoo@kangwon.ac.kr
TEL: +82-33-540-3123, FAX: +82-33-540-3129

ISSN: 1738-7167
DOI: http://dx.doi.org/10.7731/KIFSE.2015.29.2.054

진압 등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대표적인 자원봉사의 형태이며 자원봉사활동은 종교, 민주주의, 철학적 배경 등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자원봉사라는 말은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나타내는 라틴어 자유의지(Voluntas)에서 기원한다. 이것을 Voluntarism이라 하고 라틴용어로 발런타스(Voluntas)라 한다. 이러한 용어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란 Voluntas(자유의지)와 eer(사람)의 복합어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강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자발적 의사라는 뜻이며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감의 하나이다[2].

그러므로 자원봉사는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라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무보수로 일한다는 기본정신 위에 계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숭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전근대적이고 그렇다면 왜 활성화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를 토대로 의용소방대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인 의용봉공정신과 무보수 봉사단체의 특성을 지닌 의용소방대의 유래 및 운영 실태 등을 검토 ·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이론적 관점에서 설치근거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시론적 연구를 통해 조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의용소방대는 소방력이 부족한 면 지역이나 오지의 소방활동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민간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하여 의용봉공 정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하여는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검토 ·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선시대 이후 조직된 의용소방대가 이 시대 지역 소방 조직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론적 연구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3 선행 연구 사례 검토

의용소방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회봉사자라는 근간은 변함이 없으나 시대에 따라서 봉사내용은 조금씩 변해왔다. 즉 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의 다양성, 조직 관리의 다원화 현상에 따라서 소방 활동적 측면과 재난안전관리 측면으로 이원화되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대별되어 연구되어 왔다. 한국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3]에서는 조직기본이념 과 활동내용의 불명확성, 조직운영 · 관리상의 비효율성,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분석[4]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 등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아 사회적 자본 형상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5]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의 기본이념 불명확, 신임대원 선발과정의 비현실성,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전달부서의 부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개선방안과 활동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의용소방대 조직의 이론적 고찰

2.1 의용소방대의 일반적 고찰

2.1.1 의용소방대의 의의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 읍 · 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 조직으로서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의 방지와 그 수습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 · 읍 · 면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진 자들로 조직된 무보수의 자율적 민간봉사단체이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집단 및 기관들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욕구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이러한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발성에서 우러나온 민간활동이고, 활동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이므로 주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우리사회도 국민소득의 증대와 기술문명에 의한 노동력의 대치로 많은 여가를 누리게 되었다. 여가는 그 사용에 따라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는 한편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가를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에 기여하게 되며 여가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괴적 요소를 예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이 그 진압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주택이나 기타 건물이 대형화 · 고층화되고 인구가 밀집하여 생활하고 전기 · 석유 · 가스 및 기타 위험물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방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조직이 생겨났으나 아무리 전문적으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이 있어도 화재발생시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적인 소방조직을 보조할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의 경우에만 출동하는 의용소방대

가 생기게 되었다.

2.1.2 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하는 의용소방대는 시 · 도, 시 · 읍 또는 면에 둔다. 시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과 관할면적,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다[6].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정원을 보면 시 · 도 및 시 · 읍 지역은 1개대 60명, 면지역은 1개대 30명 이내이고 지역대에 설치되는 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7].

2.2 의용소방대 유래 및 변천

2.2.1 의용소방대의 유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자연부락 단위의 자위소방 활동이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 19년(1437년) 1월 경상감사의 주청(奏請)으로 주민 자위활동(무기소지 및 사용)이 허락되면서 지방 의용 금화조직이 공인되어 각 동리에 재난이 있을 때에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의용소방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8].

그 후 일제하에서는 일본 국내의 민간조직체인 소방조제도를 모방하여 제정된 총독부령 소방대규정에 의하여 향토자치제적인 사회 안정의 의용소방정신을 진작한다고 각 지방청년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그러나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종래의 의용소방대가 경방단으로 개편되고 전시체제 확립으로 소방 또는 경찰의 보조단체로서 소방과 치안유지에 종사하였다.

2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다시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정부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 왔으나 1952년 8월에는 방공단 규칙제정을 계기로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되었다[9].

1953년 7월에는 민병대를 조직케 됨으로써 방공단을 포함한 각종 청년단체가 해체되어 잠시 동안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발해지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계속 발전되어 1975년 12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관한 법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소방조직의 민간보조기관으로 재정립되었다.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러 번 걸친 제도적 변천 속에서도 계속 존속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상비 소방조직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 하지만 이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의 시련을 극복하여 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자위정신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10].

2.2.2 의용소방대 변천과정

의용소방대 최초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관 주도(官主導) 소방조직의 활동에서 발전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소방 활동을 하게 된 시기는 2004년 10월 공개된 「자치소방단 발긔문」에 의하여 1907년경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1915년 8월 도지사가 소방업무와 수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방조는 조두(組頭) 1인과 소두 · 소방수로 조직하되 필요한 경우 부조두를 두게 하고, 조두 · 부조두 · 소두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소방수는 경찰서장이 임명하였다.

1935년 5월에는 수방단(水防團)이 조직되어 소방조의 업무에서 수방업무는 제외 되었고, 1939년 7월에는 소방 · 수방 · 방공업무를 하는 경방단이 설치되고 소방조와 소방단은 폐지되고 2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다시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정부 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 왔으나 1952년 8월에는 방공단 규칙제정을 계기로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되었다. 1953년 7월에는 민병대를 조직케 됨으로써 방공단을 포함한 각종 청년단체가 해체되어 잠시 동안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하여지자 1954년 1월에 들어와서 의용소방대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는 별도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종전의 예에 따랐다[11].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 485호로 소방법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용소방대의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계속 발전되었으나 1966년 4월에는 수방업무가 의용소방대의 업무에서 제외되었으며 민병대조직 이후 방공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를 겸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토록 하였다.

1970년 12월 31일 소방법 개정 시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시 ·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던 중 민방위본부가 발족된 후인 19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시 · 군의용소방대조례준칙을 시달하였다.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및 업무보조로 인한 사고보상규정과 보수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집교육과 더불어 자체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소방공무원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2년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의 조직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서 설치시의 조례준칙과 군지역의 조례준칙을 시 · 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통합 · 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3 외국의 의용소방대

BC3000년경 고대 로마에는 자위소방조직이 민간단체의 감독 하에 화재진압과 야간 방화 순찰을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고대사회 초기의 자위소방조직이다.현재 유럽에는 320만 명 정도의 소방관이 있고, 그 중에 90%에 육박하는 290여만 명이 의용소방대원이다[12]. 세계 각국의 의용소방대, 특히 유럽에는 일찍이 의용소방대가 많은 소방활동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여기서는 의용소방대가 많은 활약을 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3.1 미국

미국에는 직업소방관, 순직업소방관, 대부분직업소방관과 유급상비대원(mostly volunteers) 또는 의용소방대원(all volunteers)이 있다.직업소방관과 유급상비대원 및 의용소방대원들 사이의 주요한 구별을 보면 직업소방관들은 정규근무 시간에 배치되고 정례기준에 맞는 보수가 지급된다는 것이며, 유급상비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은 회의, 훈련기간, 비상대응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무를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봉사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부분의 도시들은 직업소방관을 채용하지만, 그 중에는 그들의 정규소방대를 보충하기 위한 보조요원들(auxiliary personnel)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하는 지역도 있다.

그들 자체의 소방관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지역들은 직업소방관서장과 공무원, 장비조작원들(apparatus operators)을 둘 수도 있으나 능률적인 소방운영에 필요한 인사균형(staffin balance)을 제공하기 위해 유급상비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을 신뢰하고 있다. 다른 지역공동체들은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에만 직업소방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야간 중에는 유급상비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을 위한 전문소방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화재진압에 중점을 둔 이 소방교육 훈련은 그 형태와 양 및 질의 바람직한 지표를 설정해 놓고 실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정부의 소방관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화재 진압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은 대도시와 카운티 소방관서의 경우 보통 자체훈련시설과 정규훈련교관을 보유하고 전문적 ·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모집한 소방대원들은 그들이 정식임무를 받기 전 적어도 2~3개월 동안 전문소방훈련을 받고 있다.

순수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각급 소방관서 일선 소방대 기소(파출소)별로 화재진압을 위한 임무별 단위조직을 기관반 · 사다리반, 구조반, 특수장비반 등으로 구분하고 평소 각 단위조직별로 전부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다.

2.3.2 일본

1888년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공설소방조직은 적었으며 대부분 사설소방조직이었다. 1896년 내무성이 소방규칙을 공포하고 소방직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부 · 현지사의 관장으로 두었고, 1939년 경방단령 20호로 소방조는 경방단으로 개조되어 경방단은 지방관장의 직권 또는 시 · 정 · 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경방단을 설치하고 단장, 부단장, 부장, 반장 및 경방으로 구성하여 경방단에 관한 비용은 시 · 정 · 촌의 공적기관이며 그 구성원인 소방단원은 평상시에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소방활동에 종사하며 소방단원은 상근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방단의 설치 명령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하며 소방단장은 비상근이고 소방단의 추천에 의해 시 · 정 · 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된다. 일본 의용소방대 운영의 특징은 법체계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전통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은 영 · 미국에 비해 수직적이며 획일적인 면이 강하다.

2.3.3 영국

영국에서는 1830년까지만 해도 소방장비를 갖춘 공공소방기관을 중앙정부에서 통할(統轄)하지 않았다. 블랙스톤(Blackstone)의 영국 소방역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1643년 내란(The Britis Civil War) 당시 노팅엄시에서 50명의 부녀소방대가 조직되어 야간에 시내를 순찰하면서 자위소방활동을 수행한 것이 효시이다.

영국에서의 체계적인 소방조직 탄생은 런던대화재(1666년) 이후 1668년부터 1680년까지 여러 개의 화재 보험회사가 창설되어 각 보험회사에 소방대가 설치되었으나 보험가입대상물의 화재만을 담당하였다.

1824년 에딘버러, 1828년에 맨체스터 등에 공설소방대가 조직되었으나 이것은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의 공공건물 등에만 소방 활동을 하였고 일반 시민시설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에 의존하였다. 의용소방대가 점차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전역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고 이에 대해 지원금을 보조하는 제도가 마련되

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시체제에서는 각 지방의 자치단체별로 보조소방대원을 채용하여 의용소방대원을 가까운 소방대에 등록시켜서 여가를 이용한 훈련참가와 동시다발 화재에 대비하는 전시소방체제였으나, 1941년에 보조소방조직과 지방소방조직이 통합되어 국가소방조직으로 편성, 소방의 책임을 내무부가 맡게 되었다.

상근 소방대원외에 현재에도 비상근 대원이 상당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의용소방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봉급과 출동수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며 훈련은 상근 소방대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3. 의용소방대 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3.1 의용소방대 조직 및 현황

3.1.1 의용소방대의 조직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본대 남성대와 여성소방대 지역대(남성지역대, 여성지역대), 전담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등으로 본대와 지역대인 경우 총무부 · 방호부 · 지도부로 구성되고, 부 아래에 반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대는 홍보부와 구조 · 구급부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부는 서무반 · 홍보반을 구조 · 구급부에는 구조반과 구급반을 두고 있다.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한 때에는 부에 반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각 조직별로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등의 직위구조를 이루고 있다.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두고, 여성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두며 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대의 정원은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와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대별 인원은 20명 으로 한다. 다만, 면지역의 경우 의소대는 30명(여성대 30명)으로 한다.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 · 리 · 통)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하고, 부와 반의 정원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Table 1과 같다.

3.1.2 의용소방대 직업별 현황

의용소방대의 직업별 현황을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농업, 상업, 주부로 구성 되어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 및 대외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전문가의 영입과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서 봉사직업이 투철해야 할 것이다.

3.2 의용소방대

3.2.1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첫째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매월 3시간 이상 장비조직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하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 · 훈련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 · 훈련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끝으로 교육 ·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고<개정 2014.11.19.> 교육 · 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3.2.2 의용소방대의 출동실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의용소방

Table 1. Organization of Voluteer Fire Brigade

Division		The numver of teams					The numver of volunteers				
		Total	Main teams	Regional teams	Specialty teams	Exclusive teams	Total	Main teams	Regional teams	Specialty teams	Exclusive teams
Total	Total	3,622	2,462	797	126	237	95,025	71,542	15,083	1,794	5,886
	City	1,056	408	565	80	3	27,006	14,555	11,524	867	60
	Eup	544	447	61	25	11	19,239	17,191	148	570	330
	Myeon	2,022	1,607	171	21	224	48,780	39,796	3,131	357	5,496
City area	Total	2,086	1,224	670	91	101	54,900	37,922	13,522	1,074	2,382
	City	1,053	408	565	80	3	27,006	14,555	11,524	867	60
	Eup	236	200	28	3	5	8,463	7,636	551	131	145
	Myeon	794	616	77	8	93	19,431	15,731	1,447	76	2,177
District area	Total	1,536	1,238	127	35	136	40,125	33,620	2,281	720	3,504
	Eup	308	247	33	22	6	10,776	9,555	597	439	185
	Myeon	1,228	991	94	13	130	29,349	24,065	1,684	281	3,319

Table 2. Job Categories of the Volunteer Fire Fighters

Division		Total	Agriculture	Fishery	Business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Livestock luterstry	Housewife	Others
Total	Total	95,599	28,560	1,778	25,029	2,374	1,630	21,213	14,975
	Main teams	50,819	21,056	1,048	16,349	1,885	1,227	286	8,68
	Feminine teams	27,885	4,377	258	3,306	33	245	17,205	2,61
City area	Reginal teams	13,855	3,127	472	5,374	456	158	3,722	3,46
	Total	52,986	11,561	759	14,341	1,412	780	13,981	1,152
	Main teams	24,436	8,415	478	8,092	997	619	286	5,49
	Feminine teams	14,753	1,674	34	1,450	28	48	10,062	1,57
District area	Reginal teams	14,797	1,472	247	4,799	387	113	3,633	3,46
	Total	42,573	16,999	1,019	10,688	962	580	7,232	4,23
	Main teams	26,383	12,641	570	8,257	888	608	0	3,19
	Feminine teams	13,132	2,703	224	1,856	5	197	7,143	1,04
	Reginal teams	3,058	1,655	225	575	69	45	89	400

Table 3. Move Resurt

Division	Move result						
	Total	Fire xtinguish	Life saving · rescue	Fire guard works	Dducation training	Fire public relation	Others
Number of time	160,670	8,405	1,623	15,472	40,422	25,684	69,064
Number	2,101,672	94,383	10,530	17,486	964,193	493,673	364,077

Table 4. Activity Result

Division	Activity Result						
	Total	Nature protection	Traffic order	Charity event	Provide a helping hand	Alone the old	Others service
Number of time	70,085	6,342	4,887	4,763	1,283	11,088	41,772
Number	775190	111,076	58,062	53,939	26,065	125,614	400,434

대원의 활동사항(근무 등)을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 · 구급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소방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화재 초기진화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출동실적을 보면 Table 3과 같다.

3.2.3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의용소방대원 활동내역은 소방업무 보조 외에 사회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봉사 11,088회, 자연보호캠페인 6,342회, 교통질서정리 4,887회, 불우이웃돕기 4,763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이 조직의 이념과 특징을 살리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소방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실적은 Table 4와 같다.

3.3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3.3.1 출동수당 및 재해보상비 지급

의용소방대원의 처우와 수당에 관한 재원은 시 · 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증금, 대의장비 관리비 및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과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나 구조 · 구급활동 또는 동원되어 4시간 이상 활동시 약 33,000원의 출동수당과 질병 · 부상 · 사망시(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질병 · 부상 · 사망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즉 요양보상으로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재, 입원비를

Table 5. Present Condition of Move Extra Pay Provide

Division	Total			Move extra pay provide		
	Total	Main budget	Revised supplementary	Number of times	Number of people	Sum
Total	61,614,171	57,318,866	4,295,305	209,139	1,144,758	38,094,775
Wide area	52,155,056	48,103,491	4,051,565	184,926	918,431	33,732,845
Basics	9,459,115	9,215,375	243,740	24,213	226,327	4,361,930

Table 6. Children Scholarship Provide

Division	Children Scholarship Provide					
	Total		Highschool		University	
	Numver of people	Sum	Numver of people	Sum	Numver of people	Sum
Total	5,205	6,304,947	1,520	1,715,877	3,685	4,589,070
Widearea	4,933	5,997,178	1,423	1,620,810	3,510	4,376,368
Basics	272	307,769	97	95,067	175	212,702

지급하고 장애보상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장제보상은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3월분 범위 내이며 유족 보상은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출동수당 지급현황은 Table 5와 같다.

3.3.2 자녀 장학금 지급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화재진압과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대원 자녀들의 학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장학금 지급 내용은 Table 6과 같다.

4. 의용소방대 조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4.1 의용소방대 조직의 문제점

4.1.1 의용소방대원 기본교육미흡 및 소방서비스의 한계

신임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소방조직이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그 직을 희망하는 자로 구성되며 설치 · 명칭 · 구역 · 조직 · 정원 · 임면 · 훈련 ·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시 · 도 조례로 정한다[13].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조건이며 의용소방대장이 신임대원을 추천할 경우 특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렇게 임명조직된 의용소방대는 현재 각 소방서별로 담당자 1명에게 사무분장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운영시스템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봉사행정 · 소방교육 · 현장관리 등 기본적인 의용소방대 업무자체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원 중 소방 및 방재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9%,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15%에 불과한 실정[14]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1.2 의용소방대원 임명권 이원화

현행 법규상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임명하되 대장 및 부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원은 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은 시 · 도지사 및 소방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난현장에서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권행사에 어려움은 물론 의용소방대 조직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일부 대장들은 진정 봉사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시 · 도의원이나 시 · 군 · 구의원 등의 출마를 위해 전초기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그 지역의 소방업무 보자자로서의 봉사조직임을 감안할 때 임명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서장으로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1.3 의용소방대 전문 교육 및 전담부서의 부재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첫째,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둘째, 구조 · 구급 업무의 보조 셋째,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넷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및 집회, 공연 등 각종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외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임무를 띠고 조직된 봉사 단체이다[15].

상기와 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전국 의용소방대원은 약 10만 명으로 조직된 거대한 조직임에도 각 소방서 별로 담당자 1명이 많은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많은 기본적인 업무자체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에는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4.1.4 지역 자율방재 전문봉사자로서의 인식 미흡

의용소방대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자연부락단위의 자위소방활동이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19년(1437년) 지방 의용금화조직이 공인되어 각 동네에 재난이 있을 때에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의용소방대의 효시라 할 수 있다[16].

그러한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련 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국민은 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로만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용소방대원 자신도 전문봉사자로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자율방재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1.5 여성소방대원의 부족

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여성)들이 자진하여 구성한 비상근 소방대이다. 소방기본법 제37조와 시 ·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준칙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발적 봉사단체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난관련 민간단체조직이다.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예방 홍보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 보조 업무를 비상근적으로 수행하며, 기타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서 산불감시, 교통봉사, 청소년 선도, 불우이웃돕기 등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여성 봉사단체이다. 특히 여성의용소방대의 업무는 봉사활동이 주류를 이루는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비상소집 되어 소방대원의 보조역활로 식사준비 간식 등 직접 화재진압 업무는 하지 않지만 현장 주면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방관련 교육과 함께 기본적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도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성대원은 34,654명(36.5%)이고 정년은 보통 65세이나 20~30세가 262명, 31~40세가 3,226명, 41~50세가 16,838명, 51~60세가 13,575명, 61세 이상 65세 미만이 753명으로서 대부분이 40~60세 미만(88%)으로 구성되어 있다[17].

4.2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

4.2.1 신임 의용소방대원 기본 교육실시 및 소방서비스 확대

의용소방대는 관주변의 친목단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율방재의 지역봉사자이다. 그러므로 소방활동을 비롯한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재난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의용소방대원 지원자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발하고 있어,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정(所定)의 필기 및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의 선발시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의용소방대원 선발 시 거주지 중심의 지역방재의 역할을 위하여 각 담당 지역별로 일정 정원을 정한 후 수시로 선발하되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지식, 기술 및 체력을 소유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배포 된 교재 내용에 대하여 소정의 필기시험을 부과하고 이 시험에 통과한 합격자들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기준에 준하는 기본 체력을 측정한 후 소방서장이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의용소방대원의 선발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다른 봉사단체 무시험 지원에 의한 선발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른 방안은 의용소방대원용 기본학습서를 발간하여 미리 학습하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최소한의 소양에 관한 내용이므로 오히려 선발시험에 따른 다른 봉사단체와는 차별화된 전문 소방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다만 소방설비 · 가스 · 위험물 및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입대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4.2.2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의 임명권 일원화

의용소방대원 중 의용소방대장,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시 · 도지사가 임명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권이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난 현장에서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권 행사에 곤란을 겪고 조직의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전원에 대한 임명을 도지사에서 관할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방재체제의 효율적인 운영 · 통제로 지역자율성 확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대장단은 지역사회에서 도의원이나 시의원 등의 출마를 위한 개인 입지 위상 제고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의용소방대는 그 성격상 지역의 자율방재조직이므로 대장의 임명도 관할소방서장이 하여야 할 것이다.

4.2.3 의용소방대 조직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구성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의 자율방재업무의 수행에 따른 관련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함양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이 요구되는 바, 현재의 1인 담당자 제도

를 보강 및 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로써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는 물론 지역에서 자율방재업무의 활성화 도모와 지역 안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증대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전담부서의 구성은 의용소방대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방조직에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담 관리부서를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관서의 통신장비관서 등의 충분한 학습이해와 소방공무원과의 유대를 통하여 소방조직과 의용소방대가 하나가 됨으로써 각종 재난현장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평소에는 지역 재난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은 지역방재활동에 충실하고 주민의 안전생활을 선도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유능한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전문교육 및 전담부서를 두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4.2.4 전문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

서울시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방재난본부 직속 전문의용소방대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일종의 전문화와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모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전문인력의 대상으로는 홍보 및 안전교육팀, 재난대응팀, 예방팀, 봉사팀으로 운영되며 홍보 및 안전교육팀은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재난대응팀은 업무의 특성상 굴삭기, 지게차, 전자, 자동차 등의 자격증 소지자이다. 그리고 예방팀은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사,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으로 구성된 봉사팀은 노인정, 취약계층에 폭넓은 봉사를 위해 미용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등의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용, 목욕, 식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18].

전문 의용소방대는 농어촌지역의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소방인력을 보완하려는 제도이며 소방력이 미배치되고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원거리지역, 도서지역에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의 사각지역에 소방장비를 지급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화재진압 등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인데 전북 부안군 위도면과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소대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복지행정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문의용소방대도 아직은 초기지만 일부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소방봉사활동 영역의 확대와 지역의 자율방재의 역할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4.2.5 여성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요즘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사회 각 부분에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활발한 시대이다.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수준, 자녀를 많이 갖지 않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의용소방대원은 각 시도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대원의 정원은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정하는데 총 인원(95,025명) 중 남성대원(60,371명)이 여성대원(34,654명)보다 약 2배정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여성대원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19].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중년 여성들이 많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급식 지원이나 구급활동 등은 여성이 더 적합한 활동분야이다. 따라서 젊은 고급 여성인력을 소방활동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을 완화하고 여성대원을 더 많이 임명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약 600여 년 전인 세종 19년(1437년) 지방 의용금화조직이 공인된 이래 관설소방조직이 생기기 전부터 의용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청장년들이 모여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비상근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소방 안전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체임을 살펴보았다.

소방활동 중 화재진압 소방홍보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고자 조직된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전 근대적이고, 봉사를 위한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면 등이 명실상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나마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 역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통해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의미있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에서 의용소방대의 조직활성화 방안에 있어 새로운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신임대원에 대한 기본교육실시 및 소방서비스 확대 둘째, 의소대원 및 대장 등 임명권의 일원화 셋째, 의소대 전담부서 구성 넷째, 전문의소대의 효율적 운영, 끝으로 여성 의소대원의 활성화 등 의용소방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상 다루지 않았으나 향후엔 의용소방대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한 모범적인 대원이나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 각종 자격증을 가진 자들에게 일정기간 근무하면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일정시간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위사실

이 발각될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하는 등도 조심스럽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 220140089).

References

1. Volunteer Fire Brigade Act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0, Clause 1.
2. B. S. Kim, “Volunteer Work Theory” (2012).
3. K .I. Lee, “Study on How to Vitalize Korean Volunteer Fire Brigade”, pp. 63-80 (2006).
4. S. C. Woo, J. Chae and G. B. G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Social Capital for Volunteer Fire Brigade”, Vol. 28, No. 1, pp. 64-70 (2014).
5. J. D. Lee, M. O. Yoon and D. M. Choi,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Method of the Korean Volunteer Fire Brigade”, pp. 101-103 (2008).
6.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Act, Article 2, Clause 2 & Clause 4.
7.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Act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1, Clause 1.
8.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Fire Department, History of Korean Firefighting Service (1989 revised edition)”, Samjin Publisher, p. 33 (1989).
9.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Fire Department, History of Korean Firefighting Service (1989 revised edition)”, Samjin Publisher, p. 165 (1989).
10.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Fire Department, History of Korean Firefighting Service (1989 revised edition)”, Samjin Publisher, pp. 165-167 (1989).
1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Fire Department, History of Korean Firefighting Service (1989 revised edition)”, Samjin Publisher, p. 165 (1989).
12. http://www.2.comune, bologna. it/bologna/assnvfv/(Italian Volunteer Firefighters Asso ciation).
13. Volunteer Fire Brigade Establishment & Operation Act, Article 2~Article 13.
14.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4 Firefighting Administration Data & Statistics, p. 125 (2014).
15. Volunteer Fire Brigade Act, Article 6, Clause 2, and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9, Clause 1.
16. Volunteer Fire Brigade Act, Article 7, and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3.
17.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History of Korean Firefighting Service (1999 revised edition), pp. 26-35 (1999).
18. Seoul City Hall. 2013. Seoul, Selected 32 Professional Volunteer Firefighters. Retrieved from http://www.seoul.go.kr on 2013. 12.
19.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4 Firefighting Administration Data & Statistics, p. 124 (2014).